의안번호	2200476
의 뢰 인	엄태영 의원
회 답 일	2024.7.5.
추계번호	24E0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5년 8,999억원 등 2년간 총 1조 9,120억원(연평균 9,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5	2026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3항)	−5,876	−6,930	−12,806	−6,40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6항)	−3,019	−3,085	−6,104	−3,052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9항)	−104	−106	−210	−105
합 계	−8,999	−10,121	−19,120	−9,560
개별소비세	−6,293	−7,078	−13,371	−6,685
교육세	−1,888	−2,123	−4,011	−2,006
부가가치세	−818	−920	−1,738	−869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5%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추계기간 동안 전체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15.2%)에 따라 증가하고,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2024년 신규 등록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체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는 대부분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대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감소하였음

- 2024년의 경우 1~5월까지의 통계만 집계되어 이를 12개월분으로 환산함

[표 2] 최근 3년간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2020~2024년

(단위: 대,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환산값)
하이브리드	173,274	239,971 (38.5)	274,282 (14.3)	390,898 (42.5)	485,083 (24.1)
전기	31,259	71,482 (128.7)	123,772 (73.2)	115,756 (-6.5)	100,807 (-12.9)
수소전기	5,781	8,465 (46.4)	10,174 (20.2)	4,326 (-57.5)	2,702 (-37.5)
합 계	210,314	319,918 (52.1)	408,228 (27.6)	510,980 (25.2)	588,593 (15.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 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보급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목표: 2020~2030년

(단위: 만대)

유형	신차 보급목표			누적 보급목표		
	2020년	2025년	2030년	2020년	2025년	2030년
하이브리드	17.4	58	90	67.4	150	400
전기	4.6	27	44	13.5	113	300
수소전기	0.6	6	16	1.1	20	85
합 계	22.6	91	150	82	283	785

자료: 정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목표를 고려하여 최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24년 신규 등록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

❑ 하이브리드차 중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2020~2023년 평균 수준(71.5%)을 유지한다고 전제

○ 현행법 제10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1]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 동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대부분의 차종이 이를 충족하나,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전체 하이브리드차 중 동 특례를 적용받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표 4] 하이브리드차 중 세제혜택 대상 추정: 2020~2023년

(단위: 대,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73,274	239,971	274,282	390,898
세제혜택 대상(추정)	119,182	165,006	199,604	296,338
비중	68.8	68.8	72.8	75.8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정치

❑ 신규등록하는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공급가액은 2023년 기준 공급가액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을 고려하여 추산

○ 2023년 기준 공급가액은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내수 판매실적[3] 1~10위의 평균 공급가액(판매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이나, 각 모델별 기본모델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소추계되었을 수 있음

[표 5] 연료별 승용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2023년

(단위: 만원)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3,224	4,871	6,2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등록하는 친환경 자동차가 모두 국산차라고 가정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조세지출 실적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은 2019년 1,982억원에서 2022년 4,278억원이었으며, 2023년은 5,330억원으로 전망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4년 2.6%, 2025년 2.2%, 2026년 2.2%
3) 자동차통계월보(2023년 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표 6]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전망)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883	750	1,085	1,470	1,948
	교육세	265	225	325	441	584
전기	개별소비세	572	490	700	1,613	1,925
	교육세	172	147	210	484	578
수소전기	개별소비세	69	142	167	208	227
	교육세	21	42	50	62	68
전체		1,982	1,796	2,537	4,278	5,330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추계방법

(1)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 추계기간 동안 전체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15.2%)에 따라 증가하고, 전체 하이브리드차 중 세제혜택을 받는 비중이 2020~2023년 평균 수준(71.5%)을 유지한다고 전제하며,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2024년 신규 등록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7]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추정치: 2025~2026년

(단위: 대)

구 분	2025년	2026년
하이브리드	574,484	677,464
세제혜택 대상	410,937	484,601
전기	100,807	100,807
수소전기	2,702	2,702
합 계	677,994	780,974

(2)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공급가액

❑ 추계기간 동안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공급가액은 2023년 기준 공급가액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

[표 8]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2025~2026년

(단위: 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하이브리드	3,381	3,455
전기	5,108	5,220
수소전기	6,551	6,696

(3) 개별소비세 감면액

❑ 동 특례의 연료별 감면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를 고려할 때,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1대당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표 9]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액: 2025~2026년

(단위: 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하이브리드	100	100
전기	209	214
수소전기	269	275

❑ 따라서 동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

[표 10]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 2025~2026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하이브리드	−4,109	−4,846
전기	−2,111	−2,157
수소전기	−73	−74

나. 추계결과

❑ (재정수입 변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5년 8,999억원 등 2년간 총 1조 9,120억원(연평균 9,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6년

(단위: 억원)

	2025	2026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3항)	−5,876	−6,930	−12,806	−6,40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6항)	−3,019	−3,085	−6,104	−3,052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9항)	−104	−106	−210	−105
합 계	−8,999	−10,121	−19,120	−9,560
개별소비세	−6,293	−7,078	−13,371	−6,685
교육세	−1,888	−2,123	−4,011	−2,006
부가가치세	−818	−920	−1,738	−869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어수진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어수진	02-6788-4745	sjeo1993@assembly.go.kr